

#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 제155호 관련)

2023. 9. 6.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9월 6일(수) 14:00~18:2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155호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는 장기간 보유 중이던 공모주를 처음으로 매도하려다 보니 계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감사실에 문의하였음. 규정을 잘못 안내 받아서 청약계좌 별로 매도하게 되었고 고의로 규정을 어기려는 의도는 없었음. 원칙을 정확히 안내 받고 나서는 일괄적으로 타사 이관 후 1계좌 원칙을 지켜 왔음. 규정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 다만, 제가 감사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청약계좌 매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함. 금융회사 임직원은 해당 회사 감사실의 매매규제의 전문성을 믿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법 규정과 유권해석을 찾아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위원) 매도한 내역을 다 신고했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매도한 내역은 나중에 분기신고로 신고를 하게 됨.

○ (위원) 사전신고로 승인을 받으셨다는 것인지?

- ▶ (진술인) 맞음. 모두 승인을 받았음.
- (위원) 진술서에 보면 한국거래소의 잘못된 안내를 금감원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들으신 것이 맞는지?
  - ▶ (진술인) 잘못된 안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은, 금감원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공지 자체를 통해서는 다수의 계좌를 통해 매도해도 된다는 안내 자체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공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잘못된 안내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음.
  -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는 2건의 위반사항이 있음. 1건은 1분기 매매 신고를 늦게 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매매신고를 누락한 것임.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번 건은 고의도 중과실로 아닌 단순 실수에 기인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음. 저는 당시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위해서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와중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른 채 이미 신고마감 기간이 지났음. 인지했을 때는 이미 신고기간이 지났을 때이고 인지하자마자 자진해서 신고를 하였음. 이에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지연임을 강조하는 바임. 두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2건의 매매를 하였음. 2건의 매매금액 합계액은 49만 원임. 하지만 이번 건도 단순 실수

에 의한 것이므로 과태료를 40만 원으로 낮추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시 법을 어기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항상 적법하게 신고를 한 후 매매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약간 억울한 마음이 있음.

○ (위원)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 (진술인) 받았음.

○ (위원) 2건의 위반에 대해서 각각 '주의', '경고' 조치를 받으신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이번 제재심에서 지적된 2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내역 미신고의 건임. 약 1년 7개월 간의 파견근무 기간 중에는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음. 한국거래소로 복귀 후 파견근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내역을 일시에 신고하였음. 그 기간 중 일부의 내역을 단순 실수로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로 누락하였음. 입사 후 줄곧 거래내역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해당 건을 제외하고는 신고를 누락한 적이 없음. 두 번째,

자녀 계좌의 건임. 제가 비밀리에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님. 해당 계좌는 국세청에 증여계좌로 신고를 했음. 또 지난 주 금감원 제재심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다시 하였음. 국세청에 문의를 한 결과 증여세 계좌는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용만 유효하다고 함. 증여재산 공제액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지만 증여세 계좌로 신고를 하였고, 저는 보통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을 했을 뿐임. 빈번하게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아이의 용돈 수준 이상을 매매한 적도 없음.

- (위원) 아이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으로 계좌관리인도 당연히 본인으로 되어 있으신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한국거래소에서 자녀 계좌 관련한 안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 (진술인) 우선, 제가 파견을 갔다 와서, 한국거래소로 복귀를 했음. 그때 제가 감사실에 문의를 하였고 증여세 계좌로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그래서 바로 국세청에 신고를 한 것임.

- (위원) 자녀의 올바른 투자습관을 북돋기 위해서 그런 계좌를 해서 증여한다고 하신다면 자녀가 투자행위를 할 정도의 인식이 있는, 그 이후에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자녀가 직접 투자하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 ▶ (진술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름. 저는 지금도 예탁원에서 분기내역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함.
- (위원) 부모가 대신한다면 그것은 한국거래소 임직원의 자기 매매제한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느냐는 말씀임.
  -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 네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이 있었지만 한 번도 고의로 판단된 것은 없음. 수익금액도 50만 원 미만임. 그리고 그것을 제 계좌로 출금한 사실도 없음. 감사실에서 그 해에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음. 이번 자녀 계좌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세무서에 바로 신고를 해서 감사실의 지시에 따라서 증여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 사실이 없음. 제가 자본시장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함. 하지만 이중징계, 이중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그렇다고 제가 한국거래소 감사실 감사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수익을 얻었거나 그런 사실도 없음. 그리고 또 그 지시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이제 와서 무리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움.
  - ▷ 네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다섯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제가 매매와 관련해서 45종목 중에서 3종목 6건이 누락이 되어 있었고, 저도 3종목이 누락되었는지 몰랐음. 모집매출한 주식은 불공정거래가 “0”임. 그리고 저는 신규 상장일에 그 주식을 아침에 전부 다 매도를 했던 것임. 그래서 제 3종목과 관련해서 누락한 것은 지금 알았음. 이와 관련해서 과태료가 400얼마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주 2~3주, 50,000원, 20,000원 받아서 경제적인 이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 부과되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왔음. 신고 누락한 경위를 보면 제가 외부강의가 많음. 그리고 지방강의도 많고, 또 제가 퇴직을 앞두고보니까 재택근무를 많이 했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미숙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누락을 했음.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약간의 경감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계좌개설도 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고 단순히 누락한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음.

○ (위원) 진술서에 신고는 한국거래소에 가서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는지?

▶ (진술인) 한국거래소 입력시스템인데 집에서나 외부에서나 물리적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가능은 함. 그런데 한국거

래소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력하려면 한국거래소에 가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외부망이 많아서 한국거래소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입력이 없었음. 그러나 저는 시스템적으로 미숙해서 그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전송이 됐음에도 모르고 있었음. 사실 모든 것이 업무상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음.

○ (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것으로 이해했음.

▶ (진술인) 가능한 하지만 회사에 직접 근무하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선처 부탁드립니다.

▷ 다섯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먼저, 이런 분쟁처리 미비와 관련한 기관제재와 임직원의 주식매매위반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서 저희 한국거래소는 업무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음. 다만, 저희 한국거래소에 대한 안전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사안을 참작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관제재 건인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분쟁처리절차 미비와 관련하여 소명 드리도록 하겠음. 저희 한국거래소는 분쟁처

리절차 마련과 관련하여 각 시장 별로 업무규정에 한국거래소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착오매매와 관련된 처리절차를 이전부터 마련하고 있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를 고의로 위반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내의 안정적인 분쟁처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분쟁처리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별도의 내규인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도 이번에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음. 임직원 주식매매 위반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거래소 임직원은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위반 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의 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함. 이번 위반 사안들은 미공개정보이용이라든가, 불법 차명거래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와는 무관함. 공모주 신고 관련 안내가 다소 불충분했던 측면이 있고 위반의 동기도 규정숙지 미흡이나 착오에 기인한 단순 신고의무 위반사안들이 대부분임.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식매매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교육도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분쟁처리절차 마련의무 위반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쟁처리절차 외에 아까 시장별로 다른 분쟁처리절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 ▶ (진술인) 전자금융거래법상 분쟁처리절차 외의 절차인 것은 아님. 각 시장에서도 전산장애가 발생해서 호가내용과 달리 매매가 체결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들을 저희가 두고 있음.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분쟁이라고 하면 더 포괄적으로 많이 쓸 수 있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일부 유형에 대해서만 규정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을 마련해서 저희가 분쟁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음.
- (위원)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국거래소 착오매매에 대해서만 마련이 되었던 것인지?
  - ▶ (진술인) 그전에는 한국거래소 착오매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음.
  - (위원) 시세정보의 표시오류·지연, 주문처리 장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처리절차가 없었던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지?
      - ▶ (진술인) 한국거래소가 설립된 이후에 전산장애가 많이 없었음. 2017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4건 정도가 있었음. 그전에 크게 이의제기가 없었고 감독기관으로부터 전자금

융업 감독 및 관련 법규 미비에 대한 문제제기도 전혀 없었음. 또한, 장애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오류 또는 장비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장 개시 전에 미리 장애를 공지하거나 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는 장애였기 때문에 보상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좀 낮았음.

- (위원) 그다음으로는 직원들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위반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 (진술인) 공모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사전계도가 없었던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음. 금감원 검사가 5년간의 과정들을 한꺼번에 점검(review)하면서 과거 저희 감사부에서 적출되었던 내용들이 같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건수가 많아졌던 것으로 보임.
- (위원) 먼저, 아까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자기매매를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이 전산상으로 한 5일 정도 밖에 열리지 않아서 주로 외부에서 재택근무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입력할 때 촉박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음. 이런 부분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듦.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차원에서 이런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훨씬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림.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금지 여부를 떠나서 한국거래소가 공모주 청약 시장에 임직원들이 일반국민처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

인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음.

- ▶ (진술인) 우선, 신고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진술했던 진술인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15일간 신고를 받고 있음. 그리고 준법교육이라든가, 감사부의 과실에 대한 부분, 공모주 청약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내용들을 따갑게 받아들이고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한국거래소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음.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기관의 분쟁처리절차 마련과 관련하여 동기가 '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은 고의로 무언가를 안 했다는 것인데, 약간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음. 이 사안을 고의로 보게 된 근거나 논거,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여쭙어 보고 싶음.
- (보고자) 이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 것이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 당시부터 분쟁처리절차 마련에 대한 의무가 있었음.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엄연히, 상단에 보시면 제14조제2항에서 분쟁처리 신청이라든가, 그 결과 통보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의 핵심적인 절차로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마련했다고 하는 착오매매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보면 분쟁처리 신청이라든가, 그 통보에 관한 절차 부분이 아니고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손익정산을 하는 절차

그 부분들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정작 한국거래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착오매매조차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요건이나 그런 부분들은 마련되지 않았음. 2007년부터 의무화되어 있던 최소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음.

○ (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금감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분쟁처리절차와 관련되어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일반소비자를 회원으로 하는 금융회사와 증권사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거래소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함. 관련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자금융과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전산장애로 인한 거래소 착오매매에 대해 손해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위원) 지금 현재 수준은 조금 과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과하다고 판단하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우선, 문언상으로 봤을 때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거래소에는 착오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거래소에서 항변하는

대로 이것이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라고 항변할 경우 법원에서 한국거래소의 주장이 과연 일리가 없다고,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당국에서 과연 입증을 하였는지, 과태료와 같은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부과하는 법령 해석을 해야 하는데 다소 조금 과하게(ambitious) 해석을 하고 모든 내용들을 한국거래소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고 전자금융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을 동일선상에 놔두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거래소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실질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던 것임.

- (위원) 일부 분쟁처리절차가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고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지?
- (보고자) 맞음. 고의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고 다룰 경우 한국거래소의 주장도 상당부분 인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임.
- (위원) 지금 착오매매는 그래도 절차가 있고, 물론 금감원이 보기에는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을 하고 절차가 더 마련된 것인데 착오매매 외에 시세정보 오류, 주문처리 오류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그전에 절차가 없었는데 진술서에 보면 한국거래소는 약간 불가능하다, 불필요하다고 접근을 했음. 누가 책임인지도 모르겠고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보고자) 전자금융거래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침익적인 사고, 외부에서 해킹이나 이런 사고 또는 데이터를 업데이트(update)하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관련된 시스템이 정지가 되었을 때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전금법은 시행이 2007년 1월1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있다고 해서 전금법의 취지를 반영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미 유사한 것이 있어서 관련된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침익적인 처분이고 그런 경우에는 엄격한 법리적인 해석과 분쟁의 이의제기나 정식재판 청구까지도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 000씨의 경우에는 공모주이고 감사실 안내대로 사전에 신고해서 매매했기 때문에 자체 징계가 없음. 자체 징계가 없기 때문에 20% 감경이 안 되고 있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느냐는 말씀임. 런데 미미하다고 해서 징계(action)가 없는 것은 오히려 감경이 없고, 저는 이것이 공평한 처리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음.
- (보고자) 이 20% 감경한 부분은 작년에 000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서 20%를 감경하는 것인데, 저희가 삼았던 기준은 한국거래소 내규 또는 저희가 봤을 때 징계수준에 이르렀어야 정상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징계가 있었으면 20%를 감경한 것이고, 그 외에 저희가 봤을 때 마땅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20% 별도감경하지 않은 것임.

- (위원) 지난 000의 경우에는 몇 분 안됐음.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자체 징계를 받았었던 것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안내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징계를 안 한 것인데 그 이유 때문에 감경을 안 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되기는 함.
- (위원) ○위원님 말씀처럼 다 신고하고 자체 징계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금감원이 체재를 하니까 감경을 못 받아서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들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 드림.
- (보고자) 감사실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안임. 그래서 감사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고, 결국은 임직원매매의 신고 주체는 감사실이 조력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어쨌든 직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감사실은 저희가 명백히 안내한 내용 문구에서 법에 저촉되는, 법과 반대되는 그런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음.
- (위원) 아까 진술인 000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감사실의 안내에 따라서 했다는 것인데, 감사실의 명백한 위법이나 불법을 못 찾았다, 그러면서 당사자는 징계하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 (보고자) 해당 직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음. 저희가 확보한 자료상으로는 명백하게 감사실의 잘못된 점이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직원들은 유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명백히 잘못된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그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을 주장은 하지만 근거를 제출해 주신 분들은 없었음. 그래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해드리기는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음.
- (위원) 감사실도 잘 몰랐던 것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그러면 감사실도 잘 몰랐던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
- (보고자)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실 안내의 불확실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반동기가 조정이 된 사안임.
- (위원) 그런 이유로 전신고한 000씨 같은 분도, 그래서 자체 징계가 없었던 분도 감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듭. 자녀들이 나이가 어린데 계좌를 만들고, 이것을 합법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증여신고하고,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자녀 명의의 휴대폰으로 주문이 됐으면 괜찮은 것인지?
- (보고자) 정말 자녀의 금융교육이라든가 그런 취지가 맞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여를 통해서 엄마·아빠의 계산이 아

닌 자녀의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함. 참고로  
아까 증여신고 했다는 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증여했  
던 것은 다 인정을 했음.

○ (위원) 자녀명의의 계좌면 신고대상이 아닌지?

- (보고자) 만약 정말 자녀명의의 계좌이고 자녀의 재산이 확실하다는  
부분이 입증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신고대상이 아님.

○ (위원) 미성년자녀는 자기이름으로 거래를 못할 것임. 그 법률  
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좌관리를 법정  
대리인인 부모들이 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음. 단순히 증여계  
좌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을 예외로 해준다는 얘기  
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위원) 앞서 처리한 그 기준을 적용을 한 것인지 궁금함.

- (보고자) 전부 다 적용했음. 공모주 관련된 안내가 감사실에  
서 불충분했던 점, 그 다음에 타 사례 그런 부분들로 위반동  
기가 '중'으로 조정이 됐었음.

- (보고자) 공모주 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금융위 의결 취지  
에 따라서 위반동기 부분을 '중'으로 전부 다 조정을 했음.  
그리고 그다음 공모주와 관련해서 청약계좌에서 매도한, 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때 '하'로 적용  
됐던 부분들도 이번에 동일한 사례(case)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로 적용을 했음. 반동기가 '상'으로 남아있는 부분들

은 공모주가 아닌 일반주식과 관련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반동기 조정 대상이 아니었음.

(16시 05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 (위원장) 위원님들 간의 논의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5호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되, 추가검토와 논의결과를 참고하셔서 다음 증선위 때 보고를 받은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처리절차와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과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저희들이 과태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관주의 같음하는 것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부분을 추가로 금융위 자본시장과와 금감원이 검토해 주셔서 다음 회의 때 검토결과를 준비하셨다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임직원 자녀명의 계좌의 경우 약간의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 같음.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건은 이번 제재안과 무관하게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000 진술인의 경우, 다른 분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음. 감사실 등 관련 부서와 먼저 사전 상의 내지는 신고를 한 경우가 됨.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과연 감면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추가 검토하셔서 증선위 때 보고해 주시고 그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6시 23분 정회)

(16시 36분 속개)